

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**생명자원과학과**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**생명자원과학과**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 과정에 적용되며, **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**

제2장 입학관리

제3조 (우수학생의 유치) **생명자원과학과** 소속 교수들은 **생명자원과학과**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교·강사 배정

제4조 (교육과정)

제5조 (과목개설)

제6조 (교·강사 배정)

제4장 논문지도

제7조 (지도교수의 선정)

제5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가.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accepted 시 면제(교신저자, 제1저자, 공저자 포함)

나.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논문게재 시 면제

다.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2편이상 논문게재 시 면제

※ 해당 증빙자료(별쇄본, 게재증명서, 게재예정증명서 등)는 종합학력시험 신청 기간 제출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한다.

※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.

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,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임.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임

제10조 (외국어시험 과목) 내국인 학생은 영어, 외국인 학생은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 선택 할 수 있다.

※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.

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(연수)로 인한 면제 신청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 가능

(예시 :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 중 복수선택 가능)

제6장 학위과정

제11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을 기본으로 하고 2학기 말 학위취득 방법(학위논문, 연구논문 중 택1)을 선택하여 지도교수·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연구논문 선택시 39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(전공 30학점, 연구지도 9학점)을 취득해야 한다.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제14조 (예비발표)

제15조 (논문심사위원)

제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 연구논문은 지도교수와 1인의 교내 전공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로 진행한다. 연구논문의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‘수료’로 인정한다.

제17조 (논문대체 제출) 학과로 연구논문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, 제본은 겉표지를 하드카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. 제출 자료는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.

※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

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0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